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서류를 구체화하여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 확보(안 제2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있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련 서류를 규정하여 발주자에 의한 간접적인 하도급계약 통제 도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구분(안 14조 내지 안15조)
  - 찾은 설계변경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에 있어 큰 두 가지 요인인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을 구분하여 규정
    - ※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대금 변경'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공사변경·중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
  - 추가공사 시공시 서면미교부로 인하여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게 함
  - 특히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지체상금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에 있어 지체일수 제외사유를 추가 함(안 제24조)
  - 수급사업자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서 제외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시 원사업자가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함(안 제25조 제1항 제7호 신설)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원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함
- 수급사업자가 선금금 및 기성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게 함(안 제25조의 2)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함
- 기입이 의무화된 보험을 명시하여 4대 보험료부담이 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7조)
  - 법률에 의하여 기입이 의무화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을 명시적으로 규정
    - ※ 이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원사업자가 기입(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기입)하고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기입하는 것이 원칙임
  -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산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료 전가를 방지

##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계약의 변경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닌 쌍방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함(안 제3조)
-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추후 확정단가가 결정될 때 임시단가와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소급하여 정산하도록 함(안 제12조)
- 내국신용장 개설에 있어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게 함(안 제15조)
- 고용보험료 부담전가 등 부당한 대금감액의 유형 3가지\*를 추가하여 개정된 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함(안 제22조)
  - ※ 하도급법 개정에 의해 추가된 부당감액의 유형
    - ①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②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같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읊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을 도용하거나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

료 예치제도'를 도입(안 28조의 2 신설)

-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들이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할 수 있게 함

\* "기술자료"에는 소스코드, 기술정보(메뉴얼, 설계서, 플로우차트 등),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등이 해당됨

- 예치기관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이 됨
-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예치기관이 기술자료를 교부할 수 있음
  - ※ 일정한 조건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교부에 동의한 경우 등이 있음
- 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되, 당사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분쟁조정에 있어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하는 등 이의·분쟁의 해결 규정을 정비(안 제38조)

■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되,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의 내용을 반영함(안 제39조 신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b>일반사항</b></p> <p><b>6.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도용</b></p> <p><u>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보를 공정하지 않게 수집하는 행위 및 정보도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u></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에게 3개월 무료 이용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당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li> <li>•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그 소비자의 적립금(10.의 적립금을 말함), 아이템 등이 변경되거나 사용된 경우에 사업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li> </ul> <p>(신설)</p>	<p><b>일반사항</b></p> <p>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p> <p>〈예시〉</p> <p>(현행과 같음)</p> <p>(“라” 항의 예시로 수정)</p> <p>나.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당해 소비자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는 소비자정보의 도용여부확인과 관련하여 본인확인 방법으로 휴대폰인증, 전자정부 주민등록 진위확인서비스,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li> <li>• 소비자가 본인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소비자 본인에게(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li> </ul>

## 부 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의 관련거래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었음을 사업자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신고를 접수한 직원의 성명을 알려주는 등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li> </ul>
(신설)	<p>다.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권고사항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의 계정(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유무선전화번호, 주소 등 소비자정보가 변조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i> </ul>
(신설)	<p>권고사항</p> <p>2. 공개된 정보의 수집</p> <p>법 제11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의 가족사항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인물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개된 정보에서 특정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고 사용하여야 함</li> </ul> <p>나. 법 제11조 및 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신청수단은 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르되, 사업자는 모</li> </ul>

부 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사전송,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 2개 이상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수단에 의하여 회복신청을 받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는 위의 절차를 이행한 소비자의 도용 피해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도용된 경우</li> <li>- 소비자가 본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본인 정보의 이용을 위임한 경우 등으로 도용된 경우</li> <li>- 소비자가 도용피해의 회복을 위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li> <li>- 도용피해 확인을 위한 사업자의 요청에 허위진술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li> </ul> </li> </ul>

## 일반사항 6

### 〈예시〉

-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그 소비자의 적립금(10.의 적립금을 말함), 아이템 등이 변경되거나 사용된 경우에 사업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비자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로서 소비자가 그 회복 신청을 한 것이 적립금, 아이템 등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정보에 의하여 도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여야 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제정 2006.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호

### 1. 목적

이 심사지침은 판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가격 설정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전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행위요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 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불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의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한다.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 라 함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한다.

나. 거래가격의 범위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 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 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다. 강제성 판단기준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 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 ②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 ③ 유통업체들의 가격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 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 ④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⑥(준) 정찰제를 시행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2)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 조항을 규정한 경우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 (3) 권장소비자가격의 문제

제품 등에 표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약이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 라. 매매와 위탁판매의 구분기준

(1) “위탁판매”라 함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써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위탁자는 위탁판매시 자기 소유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수탁자에게 당연히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 위탁판매 해당 여부 판단기준

- ①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판매할 것,
- ② 판매로 인한 손익은 상품·용역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될 것,
- ③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수수료만 수령하는 등 주선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수탁자(판매대리점 등)가 위탁자(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위탁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를 받는데 불과한 경우 위탁판매로 봄

(3) 위탁판매 해당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가 위탁자인지 또는 수탁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① 위탁계약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량 유통방식에 적용되고 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폐기상품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

㉡ 상품소유권이 대리점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상품 공급시 외상매출로 처리하고, 가맹대리점에 대한 매출시 가맹점계정에 매출 처리하는 경우

㉣ 대리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보유·취급 등에 따른 멸실·훼손의 책임을 지거나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위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대리점 계약서에 출고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 및 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규정한 경우

㉡ 계약서에 매장상품의 화재 및 도난에 대비하여 대리점이 일정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보관·관리책임 및 소유권을 전적으로 대리점에게 맡기는 경우

## 3. 위법성 심사기준

### 가. 최저가격유지행위

“최저가격유지행위”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공급)할 때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규약 또는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를 말한다.

## (1)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① 사업자가 설정된 최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규약 및 계약 등의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주로 판단한다.
- ② 최저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면 유통단체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경쟁 제한성이나 불공정성에 대한 분석 없이 당연위법으로 본다.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특정 제품의 독점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제조업체가 제조업체간에 합의된 카르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동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나. 최고가격유지행위

“최고가격유지행위”란 대리점 등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공급)할 때 지정된 가격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강제하거나 규약 또는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를 말한다.

## (1)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2) 위법성 판단기준

최고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재여부는 경쟁 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평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되, 경쟁 제한효과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나 효율성 증대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를 위법으로 본다.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가 유통업자와 전속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조업자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소수이고 유통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 경쟁사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9월 1일 이후에 신고 또는 직권조사 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위탁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기본원칙)

-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 ① 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 화물운송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② 갑이 을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화물위탁증이나 화물운송 위탁의 위탁일, 위탁받은 것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 (계약의 변경)

-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의 요구로 운송구간, 운송물량 등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화물운송 요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화물운송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제4조 (정보제공)

- ① 갑은 화물운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획을 가급적이면 을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 ② 갑과 을은 운송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 (화물운송 요금 결정)

- ① 화물운송 요금은 구간별 물동량·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기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운송요율표에 의한다.
- ② 계약기간중 제1항에서 정한 요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운송요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요금을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요금과 확정요금의 차액은 확정요금을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제6조 (부당한 화물운송 요금 결정의 금지)

① 갑은 화물운송 요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호에 의한다.

### 제7조 (화물운송 요금 지급)

①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운송요금을 청구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② 갑은 운송요금 지급에 있어 '을의 화물운송 완료일' (운송 등이 번번히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 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화물운송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화물운송 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회주로부터 당해 화물운송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이 을에게 화물운송 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주로부터 당해 화물운송 위탁과 관련해서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갑이 화물운송 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을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을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이 '을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화물운송 요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화물운송 요금지급에 대한 특칙)

① 갑이 화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화물운송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화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화물운송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화물운송 요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요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화주에게 화물운송 수행 분에 상당하는 화물운송 요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 · 폐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화물운송 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화주가 화물운송 요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화주,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화물운송 요금의 2회분 이상 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갑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화주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을의 화물운송

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화물운송 요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회주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제9조 (부당감액의 금지)

-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위탁을 할 때 정한 화물운송 요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의한다.

### 제10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① 갑은 운송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갑은 운송에 차질이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을의 운송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 ① 갑은 을에게 운송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용역위탁에 대한 화물운송 요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① 갑은 을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갑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을이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을이 운전기사를 고용함에 있어 노조가입여부, 학별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을의 차량 보유대수나 차종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행위
4.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로 하여금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제13조 (운송안전에 대한 주의)

- ① 을은 운송 전구간에 있어 운송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 운행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 ② 을은 운송위탁업무에 사용할 차량 및 하역기계, 기타 설비 등에 대해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도록 한다.

  1.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3. 수하인이 상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 제14조 (보험가입 의무)

- ① 을은 운송도중 제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운송차량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외에 을에게 추가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 (차량의 도색 등)

- ① 을이 운송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의 차량을 갑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는 경우에는 도색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도색을 지우는 비용 역시 갑이 부담한다.
- ②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차량에 차량부착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추가하는데 따라 소요되는 비용도 갑이 부담한다.

#### 제16조 (할증요금 계상)

- ① 갑과 을이 최초 운송위탁 전에 협의를 거쳐 을의 휴무일을 결정하되, 휴무일에 갑이 운송위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정한일정 할증요금을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의 요구에 의해 야간에 을이 운송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갑이 일정 할증요금을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 (사고처리 및 손해배상)

-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② 갑과 을은 최초 운송위탁 전까지 개별계약을 통하여 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처리기준」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다음 각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지 않는다.
  1. 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물품의 멸실 · 훼손으로 인한 손해
  3. 을의 관련법규위반으로 인한 손해
  4. 을이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 ④ 갑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친다.

#### 제18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 ·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입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 회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운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운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의 운송차량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 ⑤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거래정지의 예고)**

갑과 을은 제18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법 제24조에 의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권리 · 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비밀의 유지)**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갑과 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3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하되 재원가산정에 의해 요금을 갱신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捺印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2조(재하도급)**

- ①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 때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 ③ 을은 을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제3자의 선정 · 계약 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23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갑과 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